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71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26.

발 의 자:고영인·권칠승·김남국

김홍걸・윤미향・이용빈

장철민 · 전재수 · 정태호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펜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음.

특히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 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 고 불평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.

또한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

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0조의3제1항, 제65조제7호의2, 제67조제9호의4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의3제1항 중 "의료인에게"를 "의료인, 같은 법 제80조제1항의 간호조무사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에게"로 한다. 제65조제7호의2 중 "의료인 등을"을 "의료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"로 한다.

제67조제9호의4 중 "의료인 등을"을 "의료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"로 한다.

제70조의3의 제목 중 "또는"을 "및 보건의료 종사자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방역·검사·치료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, 절차,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3(한시적 종사명령) ①	제60조의3(한시적 종사명령) ① -
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	
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	
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	
기간을 정하여 「의료법」 제2	
조제1항의 <u>의료인에게</u> 제36조	의료인, 같은 법 제80
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	조제1항의 간호조무사, 「의료
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	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
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	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및
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	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
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	른 요양보호사에게
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 다	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
음 각 호의 경비는 시·도가 부	
담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.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	7의2

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

8. • 9. (생략)

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 다음 각 저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

1. ~ 9의3. (생략)

9의4.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 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 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 비

9의5. ~ 10. (생략)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

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, 절 차,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료인,
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 요
양보호사 등을
8.•9. (현행과 같음)
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
1. ~ 9의3. (현행과 같음)
9의4
의료
인, 간호조무사, 의료기사 및
요양보호사 등을

9의5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70조의3(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제70조의3(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) ① (현 행과 같음)

> ②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<u>안전관리 기본법」</u>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이 법에 따른

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방역· 검사·치료·관리 및 역학조사업 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 개 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 <신 설>
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, 절 차,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